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정추진 취지 및 내용

장기이식과 뇌사논쟁

1996년 10월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개최되었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정추진 취지 및 내용에 관한 공청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실는다.

- 의학 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던 금세기초만 하더라도 심장이 멎고 호흡이 정지한 때를 일반적인 사망의 시점으로 여겨 왔으나,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생명 연장장치의 개발로 종래의 죽음의 개념에 일대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 1963년 미국에서 간장이식수술이 최초로 시행되고 1967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버나드 박사가 심장이식수술이 최초로 성공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각종 장기이식수술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그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 신장이식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6,500예 이상의 신장이식이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심장, 간, 폐, 췌장 등의 분야에서도 이식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장기이식의 확대와 더불어 뇌사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음. 뇌사논쟁은 죽음의 판단기준에 결정 문제와 더불어 장기이식의 현실적 필요성에 기인하여 부각되었으며, 장기이식의 현실적 필요성을 전제로 한 뇌사인정제도를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종전의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최근에는 뇌사제도야말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숭고한 사랑의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보다 차원높은 긍정적 시각으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음.

- | | |
|---|--|
| 장기이식의 확대와 뇌사논쟁에 대한 사회인식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급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법률제정 추진 배경 및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에서도 '70년 이후 뇌사문제에 대한 논의가 간간히 있었으나, 1988년 2월과 3월에 있었던 뇌사환자의 심장이식수술과 뇌사자 간이식수술을 계기로 뇌사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최근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식수술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음.- '96년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뇌사로 판정받을 경우 자신 또는 가족의 장기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71%가 “기증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정에 대해서는 7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1989년 1월 31일 대한의학협회 산하에 뇌사연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뇌사의 정의, 뇌사판정기준 등을 성안하여 보건사회부에 뇌사입법을 건의한 바 있으며, 1993년 3월 4일 대한의학협회에서 “뇌사에 관한 선언”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러나 장기이식의 확대와 뇌사논쟁에 대한 사회인식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암암리에 장기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정부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허용하고 체계적 장기이식관리와 장기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96년 6월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법률 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음. |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안)의 내용

목 적(제1조)

-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며, 타인의 질환 회복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장기 또는 조직을 적

- 출하고, 그 적출한 장기 또는 조직을 타인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장기이식의 실시에 공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장기매매의 금지(제6조, 제46조)

- 누구든지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적출 또는 이식수술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장기매매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몰수토록 하였음.
- 자신의 장기매매와 타인의 장기매매를 구별하고 후자를 엄하게 처벌함.

비밀누설의 금지(제10조)

- 장기이식과 관련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장기의 매매, 장기제공 후의 거래나 강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음.

살아있는 자로 부터의 장기적출(제13조 및 제14조)

- 살아있는 자로 부터 장기적출은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장기적출도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와 함께 생명윤리위원회 산하 장기이식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
-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경우 생명윤리위원회 산하 장기이식심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식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장기매매 행위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였음.

사망자로 부터의 장기적출(제15조)

- 사망자의 장기적출과 관련하여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였더라도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누구든지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적출 또는 이식수술을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둔다.

주요 정책토론(2)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제정소진 취지 및 내용

생명윤리위원회를
두어
뇌사판정기준을
심의하고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하였으며, 본인의 동의는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서면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음.

유족의 범위(제16조)

- 사망한 자의 장기적출에 동의할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성인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성인인 형제자매로 하였으며, 유족의 동의는 2인 이상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앞순위의 가족 및 유족의 의사가 우선하도록 하였음.

뇌사자의 장기이식(제18조, 제45조)

- 이 법안은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뇌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하여 모든 의학적 치료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뇌사판정기준에 따라 뇌사로 판정된 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뇌사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자발호흡상태, 뇌간 반사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였음.
- 뇌사판정에 교사 또는 방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살인죄 및 교사, 방조의 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

생명윤리위원회 설치(제21조)

- 뇌사자의 판정과 장기이식대상자의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뇌사판정기준 심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기준 설정 및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지도하도록 하였음.
- 생명윤리위원회 산하에 장기이식심사위원회를 두고 미성년자의 장기이식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등 장기이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였음.

뇌사판정,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제19조 및 제22조)

- 뇌사의 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동기관내에 뇌사판정위원회를 두어, 관계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

에서 하도록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였음.

장기이식등록기관(제23조 내지 제25조)

- 장기를 제공하는 자와 장기를 이식받기를 원하는 자가 등록하는 기관으로서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통하여 등록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기관은 수여자, 공여자, 이식수술기관을 연결함으로써 장기이식의 매개자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

장기이식정보센터 설치(제26조)

- 장기의 수여와 공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등록기관과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총괄관리하기 위해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장기 기증 및 이식대기자 데이터 총괄관리, 장기이식선정기준에 따른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등을 수행토록 함.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제28조)

- 장기이식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이식정보센터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음.

비용의 부담 등(제4조, 제42조)

- 장기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비용산출은 의료보험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음.
- 또한, 제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조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계곤란자에 대한 비용부담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장기의 수여와 공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등록기관과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총괄관리하기 위해 장기이식 정보센터를 설치한다.